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56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백혜련 · 이광재 · 이수진

김원이 · 전용기 · 강준현

김영진 · 노종면 · 남인순

염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로봇산업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던 전통적 로봇에서 벗어나 환경을 스스로 인지·판단하며, 자율적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로봇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물류, 배송, 돌봄, 의료, 국방·재난안전 등 사회 전반 영역으로 로봇의 도입 및 상용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안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로봇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인공 지능 로봇의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구축, 로봇 관련 안전관리 및 사이버보안 강화, 고용안정 지원 등 지능형로봇의 보급, 확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수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 및 안전한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을 진흥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지능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로봇산업, 로봇사업자, 로봇학습용데이터 등 로봇산업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로봇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 및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능형로봇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로봇산업 통계와 실태조사 및 민관의 로봇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으로

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상용화 및 구매지원, 창업의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및 로봇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로봇우수기업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지능형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의 신청 및 관리·감독, 관계 법령에 관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 로봇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로봇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활용, 표준화 지원, 정보보호 및 보안, 로봇부품등의 경쟁력 강화, 로봇진흥시범지구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차.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준공확인, 입장료 등의 징수, 관리·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카. 지능형로봇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로봇윤리현장의 제정, 지능형로봇영향평가 및 지능형로봇 도입·활용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급 촉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타. 지능형로봇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인증 및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로봇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 및 안전한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을 진흥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로봇”이란 외부환경(물리적 환경과 그에 연계된 가상환경을 포함한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그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제2호에 따른 로봇인공지능시스템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정형로봇: 특정한 장소에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 나. 이동형로봇: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 다. 착용형로봇: 사람의 신체에 착용되어 신체의 기능을 보조·증강하거나 대체하는 로봇
 - 라. 휴머노이드로봇: 인간의 신체 구조 또는 그 일부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이동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로봇
2. “로봇인공지능시스템”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지능형로봇의 인식·판단·계획·제어·학습 또는 상호작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실외이동로봇”이란 제1호나목에 따른 이동형로봇 중 용도와 관계없이 옥외의 공간을 통행하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4. “로봇부품”이란 지능형로봇을 구성하거나 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모듈 또는 장치 등을 말한다.
5. “로봇서비스”란 지능형로봇·로봇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6. “로봇산업”이란 지능형로봇·로봇인공지능시스템 또는 로봇부품을 개발·제조·공급·운용하거나 로봇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로봇사업자”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로봇학습용데이터”란 로봇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학습·검증·시험 또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수집·생성·가공되거나 이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9. “로봇랜드”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10.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이란 지능형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의 개발·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을 말한다.
 11. “안전인증”이란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이 안전성을 갖추었음을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2. “운행안전인증”이란 제46조제3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등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발·보급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로봇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로봇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지능형로봇의 연구개발 및 관련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로봇의 표준화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

5. 로봇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가공·관리·유통 및 활용 촉진
에 관한 사항
 6.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로봇서비스의 확산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지능형로봇윤리현장의 실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9. 지능형로봇의 도입·활용 확대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로봇산업 진흥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로봇산업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
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로봇
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
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로봇산업전략위원회) ① 로봇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로봇산업전략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개선에 관한 사항
3. 로봇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지능형로봇의 도입·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로봇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개선과
제22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사항. 이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포함한다.

6. 제13조에 따른 상용화 지원 및 구매 권고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로봇진흥시범지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8. 제40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윤리현장의 제정·개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로봇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로봇산업 및 지능형로봇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로봇전략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① 정부는 지능형로봇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그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과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매년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로봇사업자와 로봇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요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능형로봇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2. 지능형로봇의 구매 등 도입·활용에 필요한 사항

3.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저해하는 법령·제도의 개선
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로봇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및 로봇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
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능
형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실증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요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산업
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2.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구축
3. 로봇산업의 진흥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지원
4. 로봇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5.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전시·홍보사업
6. 지능형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7. 지능형로봇의 보급·확산 및 공공기관의 지능형로봇 도입·활용의 지원
8. 제8조에 따른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와 제9조에 따른 수요조사의 지원
9. 제12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의 개발 및 제13조에 따른 상용화 및 구매의 지원
10. 제14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의 지원
11.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2.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13. 제1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우수기업의 지정에 관한 지원
14. 제24조에 따른 로봇데이터의 생산·수집 활용 지원
15. 제25조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지원
16. 제40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윤리현장의 실행·홍보에 관한 사업
17. 지능형로봇의 품질확보 지원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사업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2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지능형로봇 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제11조(자금지원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로봇산업의 진흥과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2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기관

제12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지능형로봇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능형로봇의 기술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지능형로봇의 연구개발과 그 결과의 시험·평가 및 활용

3. 지능형로봇의 확산과 기술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4. 지능형로봇 관련 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유통 및 산학협력
5. 로봇부품의 개발과 성능 향상
6. 로봇학습용데이터의 수집·생성·가공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의 개발
7. 그 밖에 지능형로봇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상용화 및 구매지원 등) ① 정부는 지능형로봇 및 로봇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로봇과 로봇서비스의 실증 및 시범사업
 2. 지능형로봇과 로봇서비스의 구매 및 보급
 3. 지능형로봇과 로봇서비스의 실증, 표준화 및 신뢰성·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시스템 또는 설비의 구축·운영 지원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내 로봇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능형로봇 제품의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능형로봇의 구매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구매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⑤ 정부는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지능형로봇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보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구매 절차 및 보안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용화의 촉진 및 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로봇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의 발굴·육성, 전문인력의 창업과 우수 지능형로봇의 사업화,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및 창업 지원기관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로봇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산업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로봇사업자와 그 밖에 로봇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해외시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지능형로봇 및 로봇서비스에 관한 국제공동 연구개발
4. 로봇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국제 전시회 및 학술회 참가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6. 지능형로봇의 수출 지원
7. 해외 현지에서 지능형로봇의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의 구축·운영
8. 지능형로봇에 관한 외국의 안전기준·인증의 획득 및 국제표준 적합성 확인의 지원
9. 그 밖에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로봇 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표준계약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공정과 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능형로봇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능형로봇우수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로봇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능형로봇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관련 매출 비중이나 투자금액 또는 연구개발비 비중
2. 기술역량 및 경영역량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도·폐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의 지정·지원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4장 규제의 개선 및 특례

제2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로봇사업자는 지능형로봇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생산 및 사용 등 관련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0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계 법령에 관한 규제 특례) ① 로봇사업자는 지능형로봇의 특성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또는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그 적용으로 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관한 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자는 특례의 적용이 필요한 규정, 적

용 목적·기간·구역 또는 사용환경 및 안전성 확보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관계 법령의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6호 및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적용의 제외 또는 완화
2. 「전파법」 제45조 및 제5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지능형로봇의 운용방식·운용구역 및 혼신방지 조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술기준, 평가기준 또는 절차를 달리 적용하거나 완화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 중 지능형로봇의 운용과 관련된 안전기준,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하여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기준을 적용하거

나 동일·유사한 항목에 대한 기존 시험·평가·검사 결과를 활용
또는 인정

4.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기준
및 검사에 관하여 지능형로봇의 탑승·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또는 절차의 완화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
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하여 지능형로봇 또는 그 구성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시험·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인증·확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하여 지능형로봇의 구조·기능 및 운용방식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험기준 또는 인증절
차를 달리 적용하거나 기존 시험·평가 결과를 활용

7. 그 밖에 지능형로봇의 특성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요건 또는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그 적용으로 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용 제외 또는 완화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기간·구역
·사용환경·방법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⑥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특례 적용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경우 지능형로봇의 운용구역·운용시간 또는 운용속도의 제한
2. 지능형로봇의 운용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안내
3. 비상정지 수단 등 사고 예방 및 대응수단의 확보
4. 그 밖에 특례의 내용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규제특례의 적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심사·적용·변경·종료 및 취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적용 배

제) 로봇사업자가 지능형로봇을 개발·제조·실증·운용하거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치정보

제5장 로봇산업 성장 기반 구축

제24조(로봇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활용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을 개발·제조·실증·운용하거나 로봇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로봇학습용데이터와 그 밖에 로봇산업과 관련된 데이터(이하 “로봇데이터”라 한다)를 수집·관리하고 공개·제공하기 위하여 로봇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데이터의 생산·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갖춘 공간(이하 “로봇데이터팩토리”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로봇데이터플랫폼 및 로봇데이터팩토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로봇데이터의 생산·수집·등록·저장 및 관리
2. 로봇데이터의 검색·공개·제공·연계 및 공동활용
3. 로봇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4. 로봇데이터의 유통·거래 및 활용 지원
5. 그 밖에 로봇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기능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데이터팩토리 및 로봇데이터플랫폼을 국가기관등의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데이터팩토리 및 로봇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공개 또는 제공 시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데이터팩토리 또는 로봇데이터플랫폼의

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데이터팩토리 및 로봇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봇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활용, 로봇데이터팩토리 및 로봇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의 안전성·신뢰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로봇에 관한 표준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로봇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2. 지능형로봇에 관한 국제표준의 제정·개정 활동에의 참여 지원
3. 그 밖에 지능형로봇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진흥원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 및 로

봇인공지능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지침(이하 “보안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사업자에게 보안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안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안지침 중 지능형로봇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제46조제7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로봇부품등의 경쟁력 강화) ① 정부는 로봇부품과 그 생산에 필요한 소재·장비(이하 “로봇부품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부품등의 공급망 취약요소에 대한 진단·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2. 로봇부품등의 기술개발 및 실증, 상용화 지원

3. 로봇부품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

4. 로봇부품등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 및 표준화 추진

② 정부는 로봇부품등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봇부품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로봇진흥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 상용화 촉진 및 로봇산업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로봇진흥시범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운영계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 와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1. 진흥지구에서 지능형로봇을 개발·제조·실증·운용하거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우선 제공
2. 진흥지구 내 로봇 이용환경 정비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지구의 신청·지정·변경 및 해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제29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성실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① 제29조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로봇랜드 조성지역에 대하여 그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

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중단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

2. 승인된 조성실행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익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

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0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8.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망지 지정의 해제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2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실행계획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제3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5조의 인·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실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33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8조(입장료 등의 징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지능형로봇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40조(지능형로봇윤리현장의 제정 등) ① 정부는 지능형로봇 개발자·제조사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형로봇윤리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절차,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능형로봇영향평가) ① 로봇사업자는 로봇인공지능시스템이 적용된 지능형로봇을 공급하거나 이를 이용한 로봇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로봇인공지능시스템이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능형로봇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로봇영향평가의 기준에는 지능형로봇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사업자가 지능형로봇영향평가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평가방법 등을 정한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로봇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지능형로봇 또는 로봇서비스를 도입·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형로봇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정부는 지능형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능형로봇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로봇에 대한 교육·홍보
2. 지능형로봇의 체험을 위한 공간 및 행사 지원
3.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제43조(지능형로봇의 도입·활용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정부는 지능형로봇의 도입·활용에 따른 산업구조 및 직무의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2. 근로자와 지능형로봇 간 협업을 위한 직무 및 작업방식 재설계
3.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4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②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8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지능형로봇의 안전한 이용

제46조(안전인증 및 운행안전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지능형로봇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을 제조·수입 또는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지능형로봇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등의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안전인증등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등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등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등을 받은 지능형로봇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우선구매 또는 우선이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인증등의 기준·절차 등 안전인증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안전인증등의 변경·취소 등) ① 안전인증등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등을 받은 지능형로봇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제46조제7항에 따른 안전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등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등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등을 받은 지능형로봇이 제46조제7항에 따른 안전인증등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안전인증등을 받은 지능형로봇이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 사후관리, 인증의 취소·효력정지 및 개선명령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의 안전에 관한 표준 및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인증등

2. 제46조제7항에 따른 안전인증등 기준의 제·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지능형로봇의 안전·표준 및 인증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험 등 가입 의무) ①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행하는 자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는 그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책임보험등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로봇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로봇사고”라 한다)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로봇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른 원인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위원회는 로봇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로봇사고가 발생한 지능형

로봇의 소유자·관리자, 피해자·목격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로봇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로봇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봇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50조제1항에 따른 로봇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46조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로봇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로봇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52조(자료제출·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등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인증등을 받은 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의 사무소·사업장·제조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3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지정 취소
3. 제22조제7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취소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취소
5. 제4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등의 취소

6. 제4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5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벌칙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제24조제8항, 제25조제3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등을 받은 자
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능형로봇을 제조·수입 또는 공급한 자
3. 제4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등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등의 표시를 한 자
4. 제4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판매하거나 운용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등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등을 한 자
7. 제48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5.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1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8.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은 각각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로봇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으로 본다.

제8조(로봇랜드 조성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본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조성실행계획과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조성실행계획과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9조(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

로봇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행안전인증기관은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 범위는 운행안전인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의4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등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등으로 본다.

제10조(의무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형로봇을 제조·수입 또는 공급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지능형로봇을 제조·수입 또는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를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 제35조”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의3 중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로봇”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가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